

디지털정보의 저작권관리시스템

Copyright Management System of the Digitised Information

윤 선 영*
(Sun Young Yoon)

초 록

본고는 디지털화 된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저작재산권 특히, 복제권의 보호를 위하여 개발 또는 운영되고 있는 저작권관리시스템을 유형별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여건에서 가장 바람직한 저작권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키 워 드

디지털 정보, 저작권관리시스템, 복제권기구

ABSTRACT

This paper is described copyright management system for protection of the economic right to relate distribution of the digitised information. And the paper proposed the best method of copyright protection

KEYWORDS

Digitised information, Reproduction Rights Organisation, Copyright Management System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Lecturer,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Dept., Keimyung Univ.)

I. 서 론

정보 매체는 기술의 진보와 함께 다양화 되고 새로운 정보 매체의 출현에 따라 저작권제도는 그 적용 범위와 보호 방법 등을 수정하고, 현대사회의 정보 유통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왔다.

정보유통을 둘러싼 환경은 현저하게 변화되고 있다. 컴퓨터 기술, 통신기술 및 정보매체의 발달에 의해 정보가 급속하게 전자화되고, 전통적인 정보의 생산과 유통의 방법도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런 상황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그것은 컴퓨터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의 급진적인 발전으로 정보가 디지털화 되고 누구든지 쉽게, 신속하게, 질적으로 뒤떨어지지도 않게 저작물을 복제하고 수정하여 유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디지털 저작물의 특징이 기존 저작권제도에 대하여 새로운 혁신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기술적으로 저작물의 창작성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는 시스템의 개발과 민간차원에서의 관리단체 설립에 의한 저작권 보호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디지털 정보의 이용에 따른 저작재산권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복제권에 대해 저작자의 권리의 보호해 줄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선진국의 사례로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디지털 정보

디지털 정보란 2진(0과1) 형식으로 기록되고 전송되는 정보를 말한다.

디지털 정보의 내용은 문장, 컴퓨터 프로그램, 악보 등의 기호정보, 음악/음성/자연음 등의 소리 정보, 사진과 영화 등의 화상 정보가 있다. 디지털 정보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며, 1차적 디지털 정보와 2차적 디지털 정보가 있다. 이것은 입력단계에서 구분하는 것으로 아날로그 형식의 기존 저작물이 존재하는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1차적 디지털 정보는 아날로그 형식의 기존 저작물이 존재하지 않고 새롭게 디지털 형식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디지털 저작물은 창작 저작물(original)이 된다. 워드프로세서 등을 이용하여 새롭게 디스플레이 화면상에서 문장, 화상 등의 내용을 입력한다. 창작행위 자체는 아날로그 형식으로 할 때와 달라진 것이 없고, 표현하고 저장하는 방법이 달라진 것이다. 소설을 쓸 때 원고 용지와 펜이 디스플레이 화면과 키보드로 대체되고, 그림을 그릴 때 캔버스와 붓이 디스플레이 화면과 마우스로 대체되는 현상을 예로 들 수 있다.
- 2차적 디지털 정보는 기존의 문장, 음악, 화상 등을 스캐너 (scanner), 워드프로세서, 레코더 등을 이용하여 입력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2차적 디지털 저작물과 원저작물과의 일치도는 사용하는 입력기기의 성능에 의존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원정보와 달라진 부분을 적정하게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보다 정밀한 디지털화를 목표로 입력기기의 성능 향상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일치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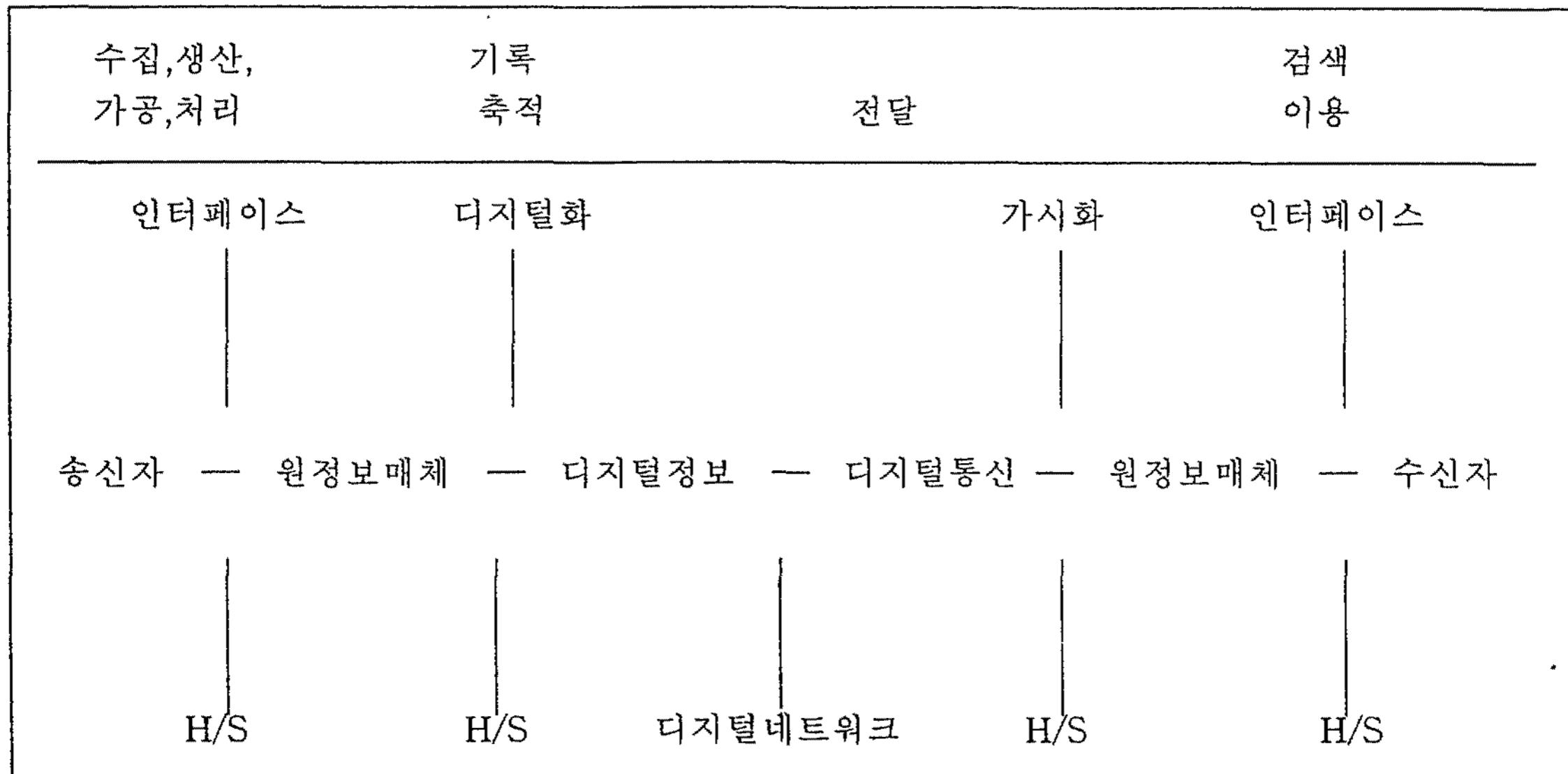
현재까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의 대다수가 2차적 디지털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고도 정보화사회라고 하는 21세기에 들어서면 지금과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즉, 1차적 디지털 저작물이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것은 기기와 통신기술의 발달로 나타나는 네트워크사회 의 현상일 수도 있다. 온라인에 의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사회에서 우리는 굳이 아날로그 형식으로 저작물을 보관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없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정보의 유통과 이용이 자유롭게 그리고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디지털 저작물을 기록하는 형식은 자기 테이프, 플로피 디스크, 디지털 오디오 테이프, CD나 비디오 디스크, 광자기 디스크, IC 메모리 등으로 다양하다. 어떤 매체에 기록하든지 디지털화하여 축적된 디지털 정보는 인간의 눈으로는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용을 인식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형식으로 변환하여 출력하게 된다. 변환 방법으로는 디스플레이 화면에의 표시, 인쇄, 연주, 음성에 의한 출력 방법이 있다. 그러나, 화상을 입력하여 화상으로 출력하는 경우만이 아니고, 문자를 입력하여 음성으로 출력한다든지, 바이올린 곡을 입력하여 피아노 곡으로 출력하는 경우

도 있다. 디지털 저작물은 압축하여 두면 이것을 해제하여 원래대로 펼쳐 둘 필요가 있지만, 압축방식이나 화면의 해상도 등의 기술적 조건에 의해 정확하게 재현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디지털 저작물의 출현은 새로운 정보매체의 출현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과도 정보화사회를 향하여 새로운 정보환경 즉, 멀티미디어 환경의 사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디지털 저작물은 이제까지의 아날로그 저작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특징이 있다. 우선 저작물을 디지털화 하는 것은 정보를 수치화 즉, 0과 1의 2진형식(binary code)으로 변환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다 정밀한 방법으로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하여 정확하게 전송하게 된 디지털 저작물과 지금까지의 인쇄물 (아날로그 저작물) 등과의 특징을 정리해 본다.

- 디지털 정보는 그것이 어떤 정보를 표현한 것인지 우리의 눈으로 직접 인식할 수 없다. 이 디지털 정보를 검색하고, 이용하려면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원정보 매체 즉, 눈으로 읽을 수 있는 정보로 변환하기 때문에 이용자에게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이다.
- 정보의 생산, 가공, 검색, 이용에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보제공자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정보를 수집, 생산, 가공, 처리한다.
- 디지털 정보는 모든 종류의 정보(텍스트, 음악, 화상 등)를 자기디스크나 CD-ROM 등의 동일한 축적 매체에 기록, 저장할 수 있고, 모두 동등하게 다루어진다.
- 정보는 전부 조그마한 비트(bit)로 분해 된다. 문자, 기호, 소리 또는 화상으로 입력된 모든 정보들이 2진 형식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출력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종래의 복제물이 원저작물에 대하여 상당히 질이 떨어지는데 반하여, 디지털 저작물은 어느 것이 원저작물 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 디지털 통신회선, 방송위성, 위성통신 등을 통하여 아주 쉽게, 질적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다수에게(1 대 N으로) 송수신 할 수 있다. 이용자 수신한 정보를 쌍방향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림 1〉 디지털 정보의 유통 과정



다시 말해, 디지털 저작물은 지금까지의 모든 전통적인 원정보 매체로 되었던 저작물을 동일한 매체에 눈으로 인식할 수 없는 형태로 기록, 축적하여 통신회선상에서 저작물의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형태이다. 더우기, 이들 디지털 정보를 쌍방향적으로, 아주 쉽게, 질적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검색하고, 복제하고, 수정하고, 편집하여 새로운 작품을 생산할 수도 있다.

디지털 정보의 유통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정보의 생산에서 검색까지의 모든 과정에 하드웨어 뿐만 아니고 소프트웨어도 가능 매체로서 보완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정보의 유통과정을 〈그림 1〉에 제시한다.

III. 디지털 기술과 저작권

전자적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정보처리는 아날로그로 부터 디지털로 급속하게 이행되고 있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시대가 되어도 아날로그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접하고 획득하게 되는 정보는 아날로그 형식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는 결국 아날로그 정보로 변환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그렇지만,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정보의 축적과 전달수단이 디지털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곧 종래의 저작권법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특히, 저작권법에 대하여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 이유는 디지털 기술의 특징 때문이다.

첫째: 복제가 쉽고 저렴한 가격으로 가능하며, 복제에 따른 품질의 저하가 없다.

둘째: 정보용량이 방대하여 대량의 정보를 축적할 수 있다.

셋째: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 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정보의 검색 또는 부분 복제 및 수정이 쉽다.

넷째: 정보 전달이 쉽다.

대량의 정보가 축적되고 디지털화되어 통신망을 통해 다수자 사이에서 유통되는 것이 일반화되는 사회의 추세에서, 사실상 저작권자가 최종 이용자의 이용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 무단으로 이용하여도 권리자가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상할 수도 있다. 특히 멀티미디어 시대에서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자신의 창작행위를 위한 소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 때문에 권리처리가 대단히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저작물은 복제가 쉽고, 복수자에게 전송이 쉽고, 다수자와 접근이 쉽고, 수정 또는 부분변경이 쉬우며, 더 나아가 단편화되기 쉽고 다른 정보와 합성하기도 쉽다. 따라서, 디지털화된 저작물은 종래의 저작물에 비해 관리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다. 그래서, 저작권제도는 이런 정보를 하나의 실체로 가상(假想)하고 권리자에게 독점권을 주고자 하는 시스템인데, 아직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고 취약한 시스템이다. 디지털 기술 및 네트워크 기술의 진보는 저작권 및 기타 정보의 표현방법, 이용형태, 유통형태 그리고 창작 과정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멀티미디어 사회의 출현은 이와 같은 변화의 다양화를 향유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술의 진보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새로운 창작의 기회를 확보하고 문화의 발전에 투자하는 규범 작성성이 요구된다.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가 1993년에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련된 디지털 기술의 영향에 관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이 심포지움은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에 대해 디지털 기술의 이용방법과 실태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기술과 권리보호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여 디지털 기술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주는 영향을 고찰하는 것이 주안점이었다. WIPO 사무국에서는 그들의 보고서에 디지털기술과 저작권에 관한 쟁점을 다각적으로 제시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의해 파급되는 영향으로 저작권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 심포지움의 논제가 된 디지털 기술과 저작권 등과의 관계에 관해서 1992년 6월부터 '저작권심의회 멀티미디어 소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5년부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멀티미디어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대책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에 의한 정보의 축적 및 네트워크를 통한 자유로운 유통이 미쳐 깨닫지 못한 사이에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고, 내 것을 침해 당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IV. 저작권 관리시스템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은 현재의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각 국가마다 국제적인 기구의 회원국으로서 자국의 저작권자에 대한 보호를 하고자 노력함과 동시에, 국가적 차원에서 대규모 정보제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정보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종래의 매체에 의한 이용과 크게 달라진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법률적으로 보호 규정이 확립된다 하여도 기술적인 측면의 보완은 필요할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법률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술적으로 개발한 보호장치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저작자의 창작성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자 기술적으로 개발한 시스템과 저작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저작권관리기구를 소개하기로 한다.

1. 기술적 시스템

(1) CITED (Copyright in Transmitted Electronic Documents)

CITED는 유럽공동체의 ESPRIT II Programme에서 'Electronic Copyright'이라고 명명하여 수행한 연구과제로 'Project CITED™'이라 한다.

권리자가 스스로 디지털 정보의 이용을 모니터하고 사용료를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정보의 디지털화를 촉진시킬 수 있고, 이용자의 정보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CITED는 이와 같은 견해를 근거로 유럽의 관련기업들이 공동연구로 수행한 연구과제이다.

- 참여 국가: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영국, 벨기에
- 참여자: 전자출판업자, 컴퓨터 제조업자, 도서관, 법정 변호사, 보안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킹의 전문가들.
- 목적: 저작물의 이용을 모니터하고 저작권자에게 적절한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시스템 상에서 관리.
- 구조: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 사용허락에 관한 조건과 이용료 등을 사전에 지정하고, 이용자는 디지털 서명 (digital signature)이라고 하는 패스워드를 사용하여 저작물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다.
- 이용 방법: 권리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한 이용자는 이용허락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한다.
- 지불 방법: 사용료는 미리 구입한 이용권에 의해 또는 이용과 동시에 구좌에서 이용료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지불.

또, 이들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의 종류와 관계자의 요청에 응하여 일정한 보안장치가 확보된다. 그러나, CITED 시스템은 1995년 1월에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시스템의 운용도 가능하지만 아직 실용화의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2) CORDS(Copyright Office, Electronic Registration, Recordation & Deposit System)

미국의 저작권국은 ARPA(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및

CNRI (Corporation for National Research Initiatives)와 공동으로 디지털화된 저작물의 등록, 납본, 이용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을 계획하고 1993년부터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시스템은 2가지 부분으로 기능을 구분하여 설계되었다.

- 종래 문서로 행해졌던 저작권의 등록, 저작물의 납본, 권리 양도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수령하고 처리하는 기능.
- 저작물의 보존, 검색 및 저작물의 이용을 저작권자가 지정한 조건에 따라 네트워크 환경하에서 수행하는 기능.

이 연구과제에서 권리양도에 관한 부분 및 저작물이용에 관한 부분이 저작권 관리에 관한 부분이며, 권리관리시스템(Rights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한다. 우선, 저작권국으로의 저작권의 등록, 납본과 저작권양도에 관하여 매뉴얼을 사용하던 것을 인터넷을 통해 네트워크 환경에서 디지털적으로 처리하고, 이를 기록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1차 단계이며, 등록 및 기록 시스템(Registration and Recordation System)이라 한다. 다음으로, 저작물에 관한 정보에 저작물의 양도와 이용에 관한 정보도 포함함으로써 온라인으로 저작권 양도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권리의 관리에 관한 문제들을 인터넷과 같은 통신망을 통해 디지털 형태로 전송된 문헌과 관련된 저작권, 저작물의 복제 등 저작권의 등록 및 기록을 전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발한 시스템이 곧 CORDS (Copyright Office, Electronic Registration, Recordation & Deposit System)이다.

미국의회도서관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6천만달러를 투입하여 ‘국립디지털도서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의회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서적과 자료 500여만 권을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여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며, 9월 현재까지 30만권에 이르는 자료를 디지털화 했다. 이 시스템은 원저작자 또는 권리 소유자에게 다음의 혜택을 줄 것이다.

- 원저작자(creator)는 그들의 저작물을 전자적으로 등록하게 될 것이다. 디지털 형태로 저작물을 전송하고 활용하며, 등록정보는 저작권등록 원부에 해당하는 중앙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된다.
- 저작권 소유자 또는 단체는 저작소유권(양도, 허락, 보안 등)의 이전과 관

계되는 문서를 전자적으로 기록하게 될 것이다.

(3) XANADU

미국의 과학자 Ted Nelson이 제안한 시스템으로, 사용자의 이용빈도와 이용 정도에 따라 정보수신료와 저작권료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등록된 저작물의 편집, 가공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등록저작물을 이용하여 제작된 작품의 등록에는 권리자의 승인이 필요 없다. 단, 복제는 제한된다. 민간 차원에서 저작권의 권리 관리를 위해 개발한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4) 超流通

일본 쓰쿠바(梵波)대학의 로이 모리치(森亮) 명예교수가 제안한 것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저작물을 어느 정도 이용했는지를 기록하는 칩을 내장하여 사용 내역을 파악하는 超流通(Superdistribution) 시스템을 업계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복사 뿐만이 아니라 편집상황도 파악하고,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1986년에는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한 시작품이 나왔으며 하드웨어 제작자와 대규모 소프트웨어 관계자, 출판사 등이 네트워크를 사용한 시스템의 실용화를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전용의 초유통 칩(chip)을 개인용 컴퓨터에 내장시켜 놓고 복사한 회수, 편집 및 가공된 상황을 칩이 기억하도록 하고, 기억된 내용을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회수하고 이용자에게 요금을 청구하도록 한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어떤 디지털 저작물에 대해서도 개인용 컴퓨터로 입력된 시점에는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저작물을 얼마나 이용했는지를 기록하는 칩을 내장하여 사용빈도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이다. 초유통 칩에는 사전에 사용제한 장치를 설치하여 둘으로써 설정된 조건을 초과하는 개인용 컴퓨터 작업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후지쯔와 일본 IBM이 전용 칩의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의 웨이브메타사가 초유통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칩을 개발 중이다. 또한 일본 전자공업진흥회와 공동으로 실용화 및 보급을 위한 활동을 추진 중이다. 이 시스템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실용화의 가능성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는 점이다.

2. 복제권 관리기구

(1) Copyright Clearance Center (CCC)

미국의 저작권집중관리센터(CCC)는 1978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 이용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저자, 출판사, 그리고 저작물 이용자의 삼자에 의해 설립된 단체이다. 이 센터의 실질적인 설립 배경은 출판사들이 저작권 집중관리를 통해서 효율적인 이용료 징수를 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주로 출판사들의 출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저작권자로 부터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의회는 결론적으로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고 이용료를 지급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간이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저작권집중관리센터는 이러한 의회의 제안에 따라서 1978년에 설립된 것으로, 사회 전반에서 – 교육용 교재라 할지라도 –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부분의 저작물 이용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저작권집중관리센터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다. 저작권집중관리센터의 기능은 저작물을 위해서 이용허락을 받고 또한 저작권자를 위해서 저작물 이용자로 부터 이용료를 받아서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비영리단체이다. 당 센터는 출판사들의 출연에 의해 설립되었고, 보다 효율적으로 많은 이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것이 그 주된 목적의 하나이기 때문에, 연방세법상 소득세 면제 대상은 될 수 없다. 당 센터는 '포괄이용허락제도' 또는 '연별이용 허락제도 (AAS : Annual Authorizations Service)'에 의해서 단체이용자들에게 8천개 가량의 출판업자에 의해 제공된 1백만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해 주고 있다. 당 센터는 또한 저작물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저작물 이용시마다 저작물 이용을 통지하고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해주는 개별이용허락제도라고 할 수 있는 '거래보고 제도 (TRS: Transactional Reporting Service)'도 마련하고 있다. 저작권자가 당 센터에 자신의 저작물을 등록하는데에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고 저작물 이용자도 객관적 이용료 이외의 아무런 추가적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다. 당

센터는 이러한 저작물이용허락제도를 대학과 정부기관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고, 저작물 이용자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저작물을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허락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당 센터는 여러 가지 방식의 저작물 이용허락제도를 제공하고 있는 바, 1978년도에 마련한 개별이용허락제도(TRS)는 저작물의 복제를 보고하는 수동적 방법에 기초하고 있다. 저작물 이용자들은 자신의 복사기 옆에 저작물 복제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마다 저작물 복제에 관한 보고를 하고 이용료를 지불한다. 따라서, 개별이용허락제도는 저작물 복제에 관하여 계속적인 기록과 보고를 필요로 하며,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매 4분기마다 갱신되는 저작물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한정한다.

(2) CLARCS (CLA Rapid Clearance System)

CLA (Copyright Licensing Agency)는 영국의 출판업자 및 출판사로 이루어진 저작권자 단체이며, 출판물의 문현 복사기에 의한 복사복제에 관하여 저작권의 집중관리를 한다. CLA에서는 문현복사기기를 설치하여 문현복사를 하고 있는 교육기관, 관공서, 기업 등과 계약을 맺고 이를 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문현복사기에 의한 복사복제의 권리처리를 하고 있다. CLA는 CLARCS (CLA Rapid Clearance System)라는 시스템을 실용화 하여 고등교육기관과 기업의 문현복사기에 의한 복사복제에 관한 권리처리에 이용하고 있다. CLARCS는 디지털화된 정보를 온라인에서 전자적으로 권리처리하는 시스템은 아니다. 그러나, 저작권관리단체인 CLA의 행위를 전자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그 자체로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저작권관리시스템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기업과의 문현복사에 관한 계약은 2단계 즉, Part A와 Part B로 계약안이 작성된다. A(기본계약)는 출판물의 일부분을 90%까지 복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포괄허락 계약이며, 기업에 고용된 전문직의 수에 의해 사용료가 산출된다. B는 기본계약을 초과한 복제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CLARCS를 이용하여 권리처리를 할 수 있다. CLARCS에서 권리자는 책 또는 정기간행물 등의 종류에 복사기에서의 이용조건을 CLA에 등록하고, CLA는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개개의 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조건을

즉시 검색 가능하도록 한다. 기본계약을 초과한 복사를 하는 기업은 CLA에 전화하여 복사를 원하는 출판물, 이용목적, 이용 부수 등을 CLA의 담당자에게 구두로 전하고, CLA의 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 후 기업측에 권리자가 지정한 이용조건을 전한다. 기업이 이 사용조건에 합의하면 기업은 CLA에서 허락을 받은 내용, 조건으로 저작물을 복사한 후 이용하고, 그 사용료는 기업의 구좌에서 CLA의 구좌로 자동 입금된다. CLA와 계약한 기업은 패스워드가 부여되며 패스워드가 없으면 CLARCS에 의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CLARCS는 디지털화 되지 않은 인쇄물 형태의 출판물을 문헌복사기에서 복사복제하는 경우에 집중적으로 권리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1) 권리자가 사전에 개개의 저작물에 대해 지정한 사용 조건 및 사용료 등의 사용허락조건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2)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만이 패스워드를 사용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3) 권리자가 지정한 사용조건에 이용자가 동의하면 사용허락 조건이 성립되고, 사용 요금도 지정한 조건에 따라 이용자의 구좌에서 권리자 단체의 구좌로 자동 입금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디지털화된 정보의 관리시스템으로서도 이용할 수 있다. 적어도, 동일한 권리자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이용자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CLA의 직원이 전화를 통해 구두로 처리하는 부분을 이용자의 화면상에 표시되는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CLARCS는 그 자체로 디지털 정보의 관리 시스템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CLA와 기업과의 이와 같은 계약은 1994년 4월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CLARCS의 실제적인 운용에 관심을 두고 있다.

(3) 日本複寫權 センター

1991년 9월 일본 문화청 지원하에 ‘日本複寫權センター’가 발족 되었다. 당센터는 저작권자가 가지고 있는 복사에 관한 권리(복사권)를 모아서 이것을 이용자에게 유료로 허락하고 모아진 사용료를 저작자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즉, 일본의 복사에 관한 저작권의 집중처리를 하는 기관으로 설립된 것이다. 1992년 4월부터 저작물 이용 및 저작물 이용료 지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당 센터는 여러 분야의 저작자로부터 복

사권을 집중적으로 위탁받고, 이용자에 대해 저작자를 대신하여 유료로 복사를 허락하며 모아진 복사 사용료를 저작자에게 분배하는 것이 그 임무이다. 당센터는 개별허락계약과 포괄허락계약의 두가지 제도를 만들어 저작권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저작물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해 그 이익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VI. 제언

우리나라는 현재 예술적 저작물에 관한 분야별 저작권협회가 각 분야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8월 21일 베른협약의 회원국으로 인정되면서 우리는 저작권에 대해 더욱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학문적인 연구 및 개발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미국등의 문헌에서 정보를 얻어야 하는 현실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이용은 유익함 뿐만 아니라 제약을 동반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우선 저작권자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부분일 수 있는 복제권을 보호해주며, 선진국의 정보를 보다 저렴하고 신속하게 정당한 경로를 통해 입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줄 기구의 설립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미국의 CCC라든가 영국의 CLA와 같은 복제권기구를 만들고 이들이 속해 있는 국제복제권기구(IFRRO)의 회원이 된다면 회원국간의 양자간 협상에 의해 '내국민 대우'의 원칙을 적용 받아 인쇄물의 이용을 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복제권기구의 설립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저작자에 대한 보호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저작자 및 저작물에 관한 모든 정보를 집중관리하여 필요로 하는 사람이 시간과 노력의 낭비없이 정확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도 중요하다.

〈참 고 문 헌〉

- 문화체육부,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III). 서울: 문화체육부, 1995.
- 정상조, “전자출판물의 발전과 저작권법의 대응,” 저작권, 가을호, 1994.
- 정진섭, 국제지적소유권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1992.
- 名和小太郎, “デジタル技術と著作権,” 情報の科學と技術, 45(6), 1995, pp. 260 – 265.
- 藤田節子, “デジタル時代の著作権に関する考察,” 情報管理, 37(6), 1994, pp. 489 – 500.
- 山中伸一, “海外における著作権の動向—デジタル情報の管理を中心に—,” 情報の科學と技術, 45(6), 1995, pp. 13 – 19.
- 山地克郎, “デジタル技術が著作権に與える影響,” 人文學と情報處理, (5), 1995, pp. 52 – 57.
- 神森大彦, “日本複寫權センターの役割,” 人文學と情報處理, (5), 1995, pp. 38 – 46.
- 栗原崇光 譯, “デジタル化された著作権,” コピライト. No. 391, 1993, pp. 2 – 17
- Keates, S. L. & Cornish, G. P., “Copyright protection of artistic materials in electronic form:the CITED approach,” Information Services & Use, 13, 1993, pp. 389 – 398.
- IFRRO: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production Right Organizations. 미국, 영국, 독일 등 유럽의 국가들이 주 구성원으로 되어 있으며 소련도 회원국이다. 미국은 1990년 6월 1일부터 소련의 복제권기구(VAAP)와도 협정이 체결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